

## 10. 建設業法 違反業體 制裁處分 基準 制定

資料提供：建設部

建設部는 '93년 1월 29일자로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92. 9.30정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이다.

### 1. 제정사유

- 85.10.16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정한 과징금제 활용계획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결과 86년이후 과징금은 115건에 1,077백만원을 부과한 반면 영업정지는 벽산건설등 7건(이중 6건은 업체의 요청에 의한것임)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공중에끼친 위해의 정도에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여야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에도 경감하거나 가중하여야할 사유를 실효성있게 조정하므로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2. 주요내용

- 건설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제 활용지침에서는 영업정지 처분하여야 할 경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처분하여야 할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영업정지처분
    - 부실시공으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때
    - 대상업체가 시공능력이 상실된 경우
    - 과징금처분후 6월이내 동일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 국세·지방세체납으로 관련기관에서 제재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대상업체가 과징금처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징금처분
    - 영업정지처분할 경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이나 근로자의 실직등이 우려되는 경우
- 현행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에도 위반회수, 위반동기, 위반내용 및 위반건수등을 참작하여 법정 제재기준의 1/2범위내에서 가감하고 있으나 가감사유중 위반내용은 영업정지 기간이 5개월 미만은 감산하고 8개월이상은 가산하도록 한것은 건설업법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정한것이므로 제재처분시 다시 가감 처분하게되면 이중 적용하게되고, 위반건수가 20건 미만인때 감산하고 51건이상 일때 가산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 이번에 건설업법 위반업체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제재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산 및 가산 사유중 위반내용 및 위반건수 적용을 다음과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
  - 위반내용 적용에 있어 제3자에게 끼친 피해 및 사회적 지탄여부에 따라 가감토록 하고,
  - 위반건수 적용에 있어 2건 이하일때 감산하고 5건이상 일때 가산토록 함.